

의안번호	제 623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 흥 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홍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3
----------	-----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29일

발 의 자: 윤홍창, 정영수, 이종욱,
이숙애, 임헌경, 최광옥,
임병운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북도의회 공고 제2017-27호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 를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략)</p> <p><u><신 설></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관계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